

삼화저축은행 ◇◇◇회장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

공보관(전화 : 3480-1451)

대법원(재판장 대법관 000, 주심 대법관 박보영)은 2013. 10. 24. **삼화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배임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**을 선고하였음(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도7473 판결).

1.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

- 삼화저축은행의 회장인 피고인 ◇◇◇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은,
 - 대주주인 ◇◇◇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, 명목상의 차주 등을 내세워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◇◇◇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삼화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지르고,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함
 -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이나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담보확보 없이 대규모 부실대출(PF 대출)을 실행함으로써 삼화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함
 - 위와 같은 대출행위로 인하여 다액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함
- 피고인 ◇◇◇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피고인A에게 직무에 관하여 4회의 골프장 비용 및 1회의 유흥주점 비용을 대납해 주고 현금(상품권 포함)을 교부하였으며(뇌물수수·공여), 피고인 ◇◇◇은 피고인A에게 금융감독원의 삼화저축은

행 검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A의 친구가 운영하는 부실한 업체에게 3회에 걸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(제3자뇌물수수·공여)

II.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

-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배임,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◇◇◇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
- 피고인A와 관련된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원심의 결론도 수긍함
 - 피고인A의 현금 수수 및 술값 대납 부분은 이를 수수하거나 대납하게 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, 골프장 이용요금은 피고인A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·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
 - 피고인A의 친구 업체에 대한 대출로 인한 제3자뇌물공여·수수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◇◇◇등과 피고인A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
- 요컨대,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모두 수긍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

III. 이 판결의 의의

-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삼화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사안으로서, 이 판결은 피고인들이 대출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을 통하여 삼화저축은행에 큰 손실을 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대출과 관계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